

# 서울특별시 마포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15-115
----------	--------

제출년월일 : 2015. 11.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 1. 제정이유

일반음식점에서 별도의 안전기준, 시간 등을 정하여 별도의 춤추는 공간이 아닌 객석에서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것에 대한 세부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일반음식점에서 유흥주점에 준하는 안전기준을 준수하는 업소에 한하여 객석에서 춤추는 행위를 허용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건전한 영업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안 제1조)

나. 용어의 정의

- 춤 허용업소의 정의
- 별도의 춤추는 공간이 아닌 객석의 정의

다. 영업자의 적용범위, 영업자의 의무 (안 제3조 내지 제4조)

라. 춤 허용업소의 지정 및 변경지정(안 제5조 내지 제6조)

- 춤 허용 업소의 지정 신청 구비서류 등

마. 춤 허용업소의 안전기준 등(안 제7조)

- 청소년 출입 및 고용금지
- 별도의 춤추는 공간 배제
- 비상구 상시 개방
- 안전요원 배치
- 출입인원 제한
- 강화된 소방 안전시설 설치 등

사. 춤 허용업소 춤 허용시간(안 제8조)

아. 지도 감독 등(안 제9조)

- 년2회 이상 지도점검 실시

자. 행정처분 등(안 제10조)

- 동일 위반행위 2회 위반시 지정 취소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57조 “별표17” 제6호 타목 7)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규제여부 : 해당사항 없음

### 4. 기타사항

가. 입법예고 : 2015. 10. 15. ~ 11. 4.

나. 가정복지과 자치법규 성별영향 분석평가 결과 : 원안동의

다. 감사담당관 자치법규 부패영향 자율평가 결과 : 원안동의

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의결(2015. 11. 13)

마. 서울특별시 마포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  
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1부

바. 비용추계서 1부

## 서울특별시 마포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라 별도의 춤을 추는 공간이 아닌 객석에서 손님들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기 위하여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필요한 안전기준과 시간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춤 허용업소”란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신고 된 일반음식점 중 영업장 내에 별도의 춤을 추는 공간이 아닌 객석에서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허용한 업소를 말한다.
2. “별도의 춤을 추는 공간이 아닌 객석”이란 영업장 내에서 손님들이 별도의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을 설치 또는 제공하지 아니하는 장소로, 영업장 내에 객실, 조리장, 화장실, 창고, 출입구, 비상구, 무대시설 등을 제외하고, 손님들이 음식을 섭취할 수 있도록 탁자, 의자 등을 설치한 곳(탁자와 탁자 사이의 이동통로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춤 허용업소의 지정에 따른 사항은 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츄 허용업소 영업자의 의무) 제5조에 따라 츄 허용업소의 신청하는 일반음식점의 영업자(이하 “영업자”라 한다)는 소음 등으로 인한 주변 주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안전사고 발생 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5조(츄 허용업소의 신청) ① 영업자가 츄 허용업소의 지정을 신청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츄 허용업소 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증
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유흥주점(단란주점) 기준의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1부
4. 영업장 평면도(탁자, 의자, 세부 배치 평면도) 1부
5.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운영계획서 1부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허용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츄 허용업소 지정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츄 허용업소 관리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영계획서의 미비사항에 대해서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변경신청) ① 제5조에 따라 츄 허용업소 지정증을 발급받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변경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은 제5조의 신청절차에 따른다.

1. 영업자
2. 영업소 명칭
3. 영업소 소재지
4. 영업장 면적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변경 허용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뒷면에 변경 내용을 반영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신청 내용의 미비사항에 대해서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춤 허용업소의 안전기준 등) ① 춤 허용업소는 다음 각 호의 안전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영업장내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2. 청소년의 출입 및 고용을 금지할 것
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소방안전점검을 분기별 1회 이상 받은 후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할 것
4.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소음진동규제법」에서 정한 생활소음규제기준을 준수할 것
5. 비상구는 상시 개방되어 있을 것
6. 영업장내 입장인원을 객석면적 1㎡당 1명으로 제한 할 것
7. 안전요원은 영업장면적 100㎡이하는 1명 이상 고정배치 하고, 영업장면적 100㎡초과할 때마다 1명씩 추가 배치 할 것
8. 정전이 있을 때 자동으로 켜지는 비상조명등을 출입구와 비상구에 각각 2개, 객석방향에 4개 이상 설치할 것
9. 휴대용 비상조명등을 벽면 5m당 2개 묶음 1개씩 설치할 것

10. 화재용 방독면 또는 휴대용 방독면을 업소 내에 분산 비치하고, 벽면 3m당 2개씩 설치할 것

11. 용량 3.3kg 소화기를 영업장내 벽면 5m당 1개씩 설치할 것

제8조(춤 허용업소의 춤 허용 시간) 춤 허용업소에서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는 시간은 해당 업소의 영업시간으로 한다.

제9조(지도·감독 등) 구청장은 식품 등의 위해방지·위생관리와 영업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춤 허용업소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제10조(행정처분 등) 춤 허용업소가 제7조에서 규정된 안전기준 등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개별 행정처분 기준이 있는 경우는 개별 행정처분 기준에 따르고, 개별 행정처분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II.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제15호에 따른다. 이 경우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2차 행정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춤 허용업소 지정을 취소하며, 지정취소를 받은 영업자는 즉시 춤 허용업소 지정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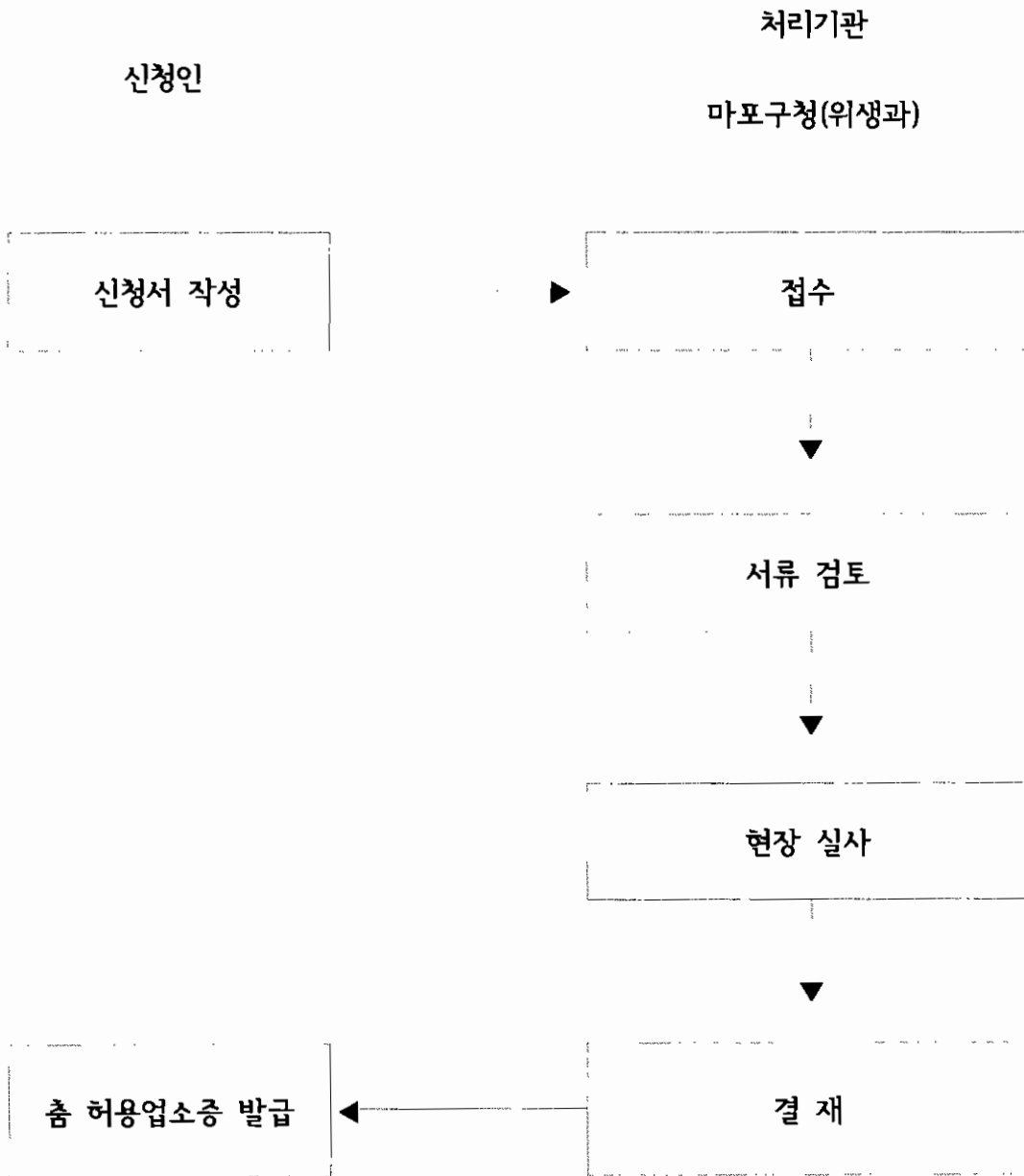
부칙

이 조례는 2016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신청 안내 및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제 호

## 춤 허용업소 지정증

- 대 표 자 :
- 영업소명칭 :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마포구
- 영업장 면적 :
- 영업의 종류 : 일반음식점(신고번호: 제 호)
- 영업의 형태 : 춤 허용업소
- 조 건 : 영업장내에 별도의 춤을 추는 공간이 아닌  
객석에서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함.

「서울특별시 마포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춤 허용업소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마 포 구 청 장

직인





서울특별시 마포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비용발생 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1호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

**3. 미첨부 사유**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1호에 해당

- 총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음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보건소 위생과 김병현
연 락 처	02-3153-9191